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482

발의연월일: 2020. 11. 18.

발 의 자:임이자·허은아·이종배

이종성 · 김기현 · 이주환

권명호 · 김영식 · 송언석

이 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이 연구활동종사자들을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함.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지난 2019년 12월 4명의 학생연구원이 부상당한바, 그 중 2인은 중증 화상을 입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함.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여 연구실 안전보험은 피해자 구제에취약하고 그 규모로 인해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연구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공계 연구인력을 보호하고 양성하려는 것임.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대다수 특수형 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미비함.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및 제1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81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 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 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⑥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4항"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으로, "신청한 경우에는"을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가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를 "사람이 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이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 1.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해야 하는 경우
-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 업하는 경우
- 3.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하여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제1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종전의 제125조제6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 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이 법이 적용되는 것으 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 한 특례) ① ~ ③ (생 략)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장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 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 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 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⑥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 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 1. 부상·질병, 임신·출산·육 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해야 하 는 경우
 -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 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 상 휴업하는 경우
 - 3.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 자를 위하여 보험금 지급을 목 적으로 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 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6)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u>자가</u>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후단 신설>

⑦ ~ ⑪ (생 략)

<u>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u> 로 정하는 경우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 인한 경우에는------